

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8)

—권8, 12:16-13:07을 중심으로—

조은주*

요약

이 글은 점토구결자료 『瑜伽師地論』 권8의 12:16-13:07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.

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이 글은 『瑜伽師地論』 권8의 일부(12:16-13:07)에 대하여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十不善業 중 欲邪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.

구체적인 해독안은 아래와 같이 A, B, C, D, E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해독안을 제시한다.

A: 원문에 현토된 점토와 부호를 판독한 결과.

B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 표시.

C: 자토석독구결문으로 재구성한 결과.

*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.

D: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 국어로 축자역한 결과.

E: 해당 부분의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.

<유가08 12:16-17>

A: 有治罰[51(·)]者[23~33(·)]謂諸國王[31(·)]若執理者[31(·),22~32(·)]以[55(·)]治罰[42(·)]法[34(·),=24(·)]而[43(·)]守護[43(l)]故[55(·)]

B: 有治罰[1]者[xλ 1]謂諸國王[人]若執理者[人, 11]以治罰[七]法[乙, 11]而[ㄴ]守護[xㄴ]故[ㄴ]

C: 有治罰(11) 1 {者}xλ 1 謂 諸 國王 人 若 執理者 人 11 治罰 七 法 乙 {以} 11 而 ㄴ 守護 xㄴ {故} ㄴ

D: 有治罰이다 하는 것은, 즉 모든 국왕과 執理者가 治罰의 法을 써 守護하는 까닭이며

E: 다스리는 형벌이 있다 함은 모든 국왕이거나 일 맡은 이가 형벌을 다스리는 법으로써 수호하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2:17-18>

A: 有障導[=51(·)]者[23~33(·)]謂¹⁾守門者[23(·)]所[역독선]守護[33(·), 43(l)]故[51(·)]

B: 有障導[1]者[xλ 1]謂守門者[ㄹ]所守護[1 1, xㄴ]故[1]

C: 有障導(11) 1 {者}xλ 1 謂 守門者 ㄹ 守護 1 1 所 xㄴ {故} 1

D: 有障導다 하는 것은, 즉 守門者의 守護한 바인 까닭이다.

E: 장애가 있다 함은 문지기가 수호하게 되기 때문이다.

<유가08 12:18-19>

A: 此[42(·)]中[44(·)]略[45(·)]顯未適他者[23(·)]三種[42(·)?]守護[34(·),

1) ‘謂’자의 ‘月’의 아래 두 획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 ‘日’처럼 보인다.

51(:)#51(l)]

B: 此[七]中[+]略[ㄴ]顯未適他者[→]三種[七]守護[乙,x l]

C: 此七 中(3)+ 略ㄴ 未適他者→ 三種七 守護乙 顯x l

D: 이 가운데에 간략히 未適他者の 세 가지의 守護를 나타내는 것이다.

E: 이 중에서, 아직 다른 이에게 시집가지 않은 이를 세 가지로 수호한다 함을 간략하게 나타냈나니,

<유가08 12:19-20>

A: 一尊重[53(·)]{32(·)}至親[53(·)]眷屬[53(·)]自己[53(·),+15~25(-),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1(·)]

B: 一尊重[一]至親[一]眷屬[一]自己[一,ノ尸,→]之所守護[ノ尸,人]

C: 一 尊重一 至親一 眷屬一 自己一ノ尸→{之} 守護ノ尸 所人

D: 첫째 尊重이니 至親이니 眷屬이니 自己니 하는 이의 守護하는 바와

E: 첫째는 존중할 이와 가까운 겨레붙이와 권속들과 자기가 수호함ियो,

<유가08 12:20-20>

A: 二王[53(·)]執理家[53(·),+15~25(-),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1(·)]

B: 二王[二]執理家[二,ノ尸,→]之所守護[ノ尸,人]

C: 二 王二 執理家二ノ尸→{之} 守護ノ尸 所人

D: 둘째 왕이니 執理家이니 하는 이의 守護하는 바와

E: 둘째는 왕과 일같은 이가 수호함ियो,

<유가08 12:20-21>

A: 三諸守門者[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1(·),51(·)]

B: 三諸守門者[→]之所守護[ノ尸,人,l]

C: 三 諸 守門者→{之} 守護ノ尸 所人(11) l

D: 셋째 모든 守門者の 守護하는 바이다.

E: 셋째는 문지기가 수호하게 되는 것이다.

<유가08 12:21-22>

A: 他妻妾[51(·)]者[23~33(·)]謂已[24(·)]適他[34(·),54~55(·)]

B: 他妻妾[1]者[x入1]謂已[3]適他[乙,x分]

C: 他妻妾(1) 1 {者}x入1 謂 已 3 他乙 適x分

D: 他妻妾이다 하는 것은, 즉 이미 남을 適한 이이며

E: 다른 이의 아내와 첩이라 함은 이미 다른 이에게 시집 간 이를 말하며,

<유가08 12:22-23>

A: 他所攝[51(·)]者[23~33(·)]謂卽未適他[34(·)?,22~32(·),22(·)]爲三守護[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4(·),32~42(·),25(/),55(·)]

B: 他所攝[1]者[x入1]謂卽未適他[乙, 1, 3]爲三守護[3]之所守護[尸, 乙, 八, 〚x矢, 分]

C: 他所攝(1) 1 {者}x入1 謂 卽 他乙 適(尸) 未 1 (〚) 3 三 守護 3 {之} 守護 尸 所乙 爲 八 〚x矢, 分

D: 他所攝이다 하는 것은, 즉 곧 남을 適하지 아니하여 세 守護의 守護하는 바를 받는 것이며

E: 다른 이가 포섭하는 바라 함은 아직 다른 이에게 시집가지 않은 이로서 세 가지 수호로써 수호 받는 이를 말하며,

<유가08 12:23-13:01>

A: 若由兇詐[34(·),=24(·),51(·)]者[23~33(·)]謂矯亂已[22(·)]而行[역독선]邪行[34(·),15~25(/),55(·)]

B: 若由兇詐[乙, 3, 1]者[x入1]謂矯亂已[3]而行邪行[乙, 〚x矢, 分]

C: 若 兇詐乙 由 3 1 {者}x入1 謂 矯亂(尸) 已(3 〚) 而 邪行乙

行 ヽ x 矢 分

D: (또한) 兇詐를 말미암다 하는 것은, 즉 矯亂하고 나서 邪行을 行하는 것이며

E: 음흉한 속임수 때문이라 함은 어수선하게 어지럽힌 뒤에 사뻐 행을 행함을 말하며,

<유가08 13:01-02>

A: 若由強力[34(·)?, 24(·), 51(·)]者[23~33(·)]謂對父母等[34(/), 22(·)]公然[45(·)]強逼[15~25(/), 55(·)]

B: 若由強力[乙, ㅅ, ㅣ]者[x ㅅ ㅓ]謂對父母等[ㅓ ㅓ 乙, ㅅ]公然[ㅅ]強逼[ㅓ x 矢, 分]

C: 若 強力乙 由 ㅅ ㅣ {者} x ㅅ ㅓ 謂 父母等 ㅓ ㅓ 乙 對(ㅓ) ㅅ 公然 ㅅ 強逼 ㅓ x 矢 分

D: (또한) 強力을 말미암다 하는 것은, 즉 부모들을 對하여 공공연히 強逼하는 것이며

E: 억센 힘 때문이라 함은 부모들에게 대하여 공공연하게 억지로 남의 의사를 꺾는 것을 말하며,

<유가08 13:02-03>

A: 若由隱伏[34(·), 24(·), 51(·)]者[23~33(·)]謂不對彼[34(·)?, 22(·)]竊[32~42(·)]相[21(·)]欣欲[15~25(/), 55(·)]

B: 若由隱伏[乙, ㅅ, ㅣ]者[x ㅅ ㅓ]謂不對彼[乙, ㅅ]竊[ㅅ]相[ㅅ]欣欲[ㅓ x 矢, 分]

C: 若 隱伏乙 由 ㅅ ㅣ {者} x ㅅ ㅓ 謂 彼乙 對(ㅓ ㅓ) 不(ㅓ ㅓ) ㅅ 竊 ㅅ 相 ㅅ 欣欲 ㅓ x 矢 分

2) ‘不對(ㅓ) ㅅ’일 가능성도 있다.

3) 15세기 연해 자료에 나오는 ‘그스기’에 대응하는 표기로 보인다.

D: (또한) 隱伏을 말미암다 하는 것은, 즉 그들을 對하지 아니하여 몰래 서로 欣欲하는 것이며

E: 숨어 엮으려서라 함은 그들에게 상대하여 함이 아님을 말한다. 몰래 서로 기뻐하며 바라면서

<유가08 13:03-03>

A: 而[43(·)?]行欲行[34(·),15~25(/),51(·)]者[23~33(·)]謂兩兩交會[15~25(/),55(·)]

B: 而[ㄴ]行欲行[乙, ヽx矢, 1]者[x入1]謂兩兩交會[ヽx矢, ㄴ]

C: 而ㄴ 欲行乙 行 ヽx矢 1 {者}x入1 謂 兩兩交會 ヽx矢 ㄴ

D: 그리고 欲行을 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, 즉 兩兩交會하는 것이며

E: 음욕을 행한다 함은 둘이가 맞아서 교합함을 말하며,

<유가08 13:03-05>

A: 卽於此事[=44(·), 구결자(+)]⁵⁾非理欲心[43(·)]而行邪行[34(·),15~25(/),51(·)]者[23~33(·)]謂於非道[53(·)]非處[53(·)]非時[53(·),24(\),44(·)]自[23(·)]妻妾[23(·)]所[44(·)]而[43(·)]爲罪失[34(·),25(/),51(·), 빠침선(22~32,\)]

B: 卽於此事[+]非理欲心[ㄴ]而行邪行[乙, ヽx矢, 1]者[x入1]謂於非道[ㄷ]非處[ㄷ]非時[ㄷ, / ㄴ, +]自[ㄹ]妻妾[ㄹ]所[+]而[ㄴ]爲罪失[乙, ヽx矢, 1]

C: 卽 {於}此 事+ 非理欲心ㄴ 而 邪行乙 行 ヽx矢 1 {者}x入1 謂 {於}非道ㄷ 非處ㄷ 非時ㄷ / ㄴ+ 自ㄹ 妻妾ㄹ {所}+ 而ㄴ 罪失乙 {爲} ヽx矢 1

4) 衆乙 與七 相ㄷ 雜住 ヽ尸 不多 ヽ } <유가20, 29:06-08>.

5) 점토가 한자의 검은 획 가까이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서 구결자 ‘+’를 기입한 듯하다.

D: 곧 이 일에 非理欲心으로 邪行을 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, 즉 非道이니 非處이니 非時이니 하는 것에, 자기의 妻妾에게 罪失을 하는 것이다.

E: 곧 이 일에 도리가 아닌데 욕심으로써 사뻐 행을 행한다 함은 길이 아니고[非道] 처소가 아니고[非處] 때가 아닐 적[非時]에 자기의 아내와 첩에 대하여 잘못을 저지름을 말한다.

<유가08 13:06-07>

A: 此[42(·)]中[22(·)⁶, 42(·)]略義[22~32(·)]者[15~25(-), 23~33(·)]謂略[45(·)]顯示若彼所行[31(·)]若行差別[31(·)]若欲邪行[31(·), 34(·), 33~43(:), 境界線]應知[42(\), 51(·)]

B: 此[七]中[3, 七]略義[1]者[尸, 入 7]謂略[5]顯示若彼所行[人]若行差別[人]若欲邪行[人, 乙, x印]應知[ノ 7, 1]

C: 此七 中 3 七 略義 1 {者} 尸 入 7 謂 略 5 若 彼 所 行 人 若 行 差別 人 若 欲 邪 行 人 乙 顯 示 x印 知 ノ 7 {應} 七 1

D: 이 중의 略義인 것은, 즉 간략히 그의 所行과 行差別과 欲邪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, 알아야 할 것이다.

E: 이 중에서 간략한 이치라 함은, 간략하게 그의 행하는 바와 행의 차별과 음욕의 사뻐 행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.

참고문헌

- 김영옥(2001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(點土)의 해독 방법 연구』, 『구결연구』 7, 구결학회, pp. 57-77.
 박진호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2)』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pp. 216-231.
 서민옥(2004), 『『如』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』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pp.

6) 점토가 획의 끝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.

175-220.

- 이승재(2001), 『『유가사지론』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』, 『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』(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), 태학사, pp. 229-250.
- 이용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3)』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pp. 233-247.
- 이전경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4)』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pp. 221-243.
- 장경준(2002), 『點土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-『유가사지론』 권5, 8을 대상으로-』, 『구결연구』 9, 구결학회, pp. 205-225.
- 장경준(2004가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)』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pp. 192-212.
- 장경준(2004나), 『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』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pp. 149-174.

(153-0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59-28번지 일성빌딩 4층)

E-mail: aemiya1@hanmail.net

접수일자: 2005. 6. 30.

게재결정: 2005. 7. 30.

A Study on Cipher in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—Focusing on vol. VIII.12:16-13:07—

Cho, Eun-Joo

This paper presents a tentativ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cised in the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.

Key words: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, cipher kugyol(點土釋讀口訣)